공 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15, 12, 09,

장 안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별첨 현황도와 같음

2. 도로구간 : 영화동 37-463, 영화동 38-12, 영화동 38-14번지

3. 도로길이 : 18.29m

4. 도 로 폭 : 3.0m

5. 도로면적 : 62.0 m²
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-4 외1필지 상의 건축허가

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-7번지 상의 건축허가

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-8번지 상의 건축허가
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
8. 편입토지 (단위 : m²)
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고
영화동	37-463	대	19	19	0	주식회사 동○○설	
영화동	38-12	대	14	14	0	주식회사 동○○설	
영화동	38-14	대	29	29	0	주식회사 동○○설	
	합 계		62	62	0		

9. 공고기간 : 2015. 12. 09. ~ 2016. 01. 07. (30일간)

10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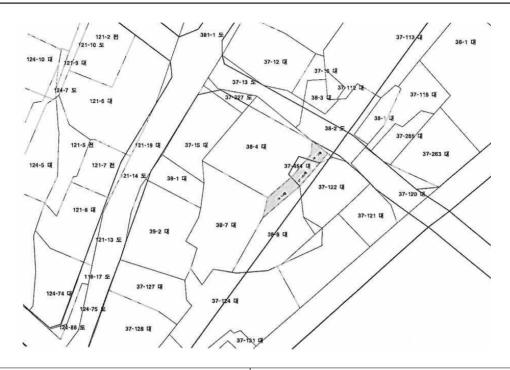
11. 기타사항

위 도로지정 공고 관련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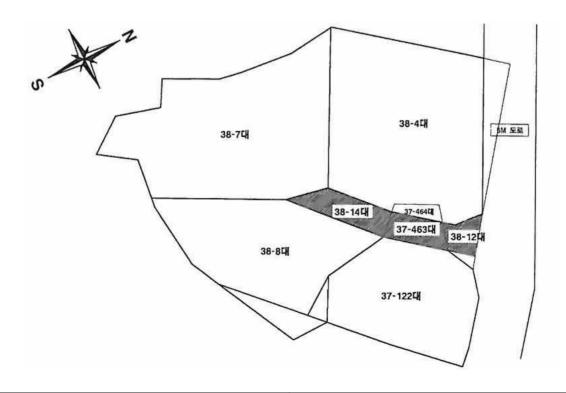
소관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/성명	시설8급 정혜숙	전화번호	031-228-5237
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위치도 및 현황도

•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 축 척 <임 의>



현황도 축 척 <임 의>